|  |  |  |
| --- | --- | --- |
| **국가외환관리국의 자본항목 환결제 관리정책 개혁과 규범에 관한 통지**  회발[2016]16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분국; 각 중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외환관리제도 개혁을 한 단계 심화하고, 경내기업경영과 자금운영수요를 보다 만족시키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총결에 앞서 일부 지역 시범경험에 기초하여 전국범위 내 기업외채자금 환결제 관리방식 개혁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본항목 외화수입 자유 환결제 및 지급관리를 통일적으로 규범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전국범위 내 기업외채자금 환결제 관리방식 개혁 실시  중국(상해) 자유무역 시범구, 중국(천진) 자유무역 시범구, 중국(광동) 자유무역 시범구 및 중국(복건) 자유무역 시범구 관련 시범경험에 기초하여, 기업외채자금 환결제 관리방식 개혁을 전국적으로 시범 확대한다. 본 통지 실시일로부터 경내기업(중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 포함, 금융기관 불포함)외채자금은 모두 자유 환결제 방식에 따라 환결제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2. 경내기구의 자본항목 외화수입 자유 환결제 정책 통일  자본항목 외화수입 자유 환결제라 함은 관련 정책으로 이미 자유 환결제를 명확히 실행하는 자본항목 외화수입(외화자본금, 외채자금과 경외상장회수자금 등을 포함)이자, 경내기구의 실제경영수요에 근거하여 은행에서 환결제를 처리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현행 법규가 경내기구 자본항목 외화수입 환결제에 대한 제한성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경내기구 자본항목 외화수입 자유 환결제 비율은 잠정적으로 100%로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 정황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기에 상술한 비율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자본항목 외화수입 자유 환결제를 실행하여도 경내기구는 여전히 지급 환결제 제도에 따라 그 외화수입을 사용함에 있어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은 지급 환결제 원칙에 따라 경내기구에 건별 환결제 업무를 처리할 시, 경내기구 이전 환결제(자유 환결제와 지급 환결제 포함)자금 사용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모두 심사하여야 한다.  경내기구 외화수입을 경내원화로 대체하고 또한 그 해외로 대외지급 하는 것은 현행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경내기구의 자본항목 외화수입 자유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 자금을 환결제 지급대기계좌에 불입하여 관리  경내기구는 원칙상 은행에서 각각 대응되는 “자본항목-환결제 지급대기계좌”(이하 “환결제 지급대기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자본항목 외화수입 자유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 자금을 예치하는 용도로 쓰며, 또한 해당 계좌를 통해 각종 지급수속을 처리한다. 경내기구는 동일 은행 사이트에서 개설한 동일명의의 자본금계좌, 경내자산현금계좌, 경내재투자계좌, 외채전용계좌, 경외상장전용계좌 및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유형의 자본항목계좌를 하나의 환결제 지급대기계좌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경내기구는 지급 환결제 원칙에 따라 환결제 후 취득한 인민폐 자금은 환결제 지급대기계좌를 통해 지급 할 수 없다.  환결제 지급대기계좌의 수입범위는 동일명의 또는 경내 지분투자를 전개하는 기업의 자본금계좌, 경내자산현금계좌, 경내재투자계좌, 외채전용계좌, 경외상장전용계좌 및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유형의 자본항목 외환계좌에서 환결제 후 이체된 자금, 동일명의 또는 경내 지분투자를 전개하는 기업의 환결제 지급대기계좌에서 이체한 자금, 본 계좌에서 규정에 부합하여 출금 후 이체한 자금, 거래철회로 인해 반환된 자금, 규정에 부합하는 인민폐 수입, 계좌이자수입 및 외환국(은행)을 거쳐 등기하거나 또는 외환국 비준을 거친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환결제 지급대기계좌의 지출범위는 경영범위 내의 지출, 경내 지분 투자자금과 인민폐 보증금 지출, 자금집중관리 전용계좌 및 동일명의의 환결제 지급대기계좌로의 이체, 외국환매입∙지급 또는 직접 대외외채상환 및 원리금상환전용계좌로의 이체, 외국환매입∙지급 또는 직접 경외로 이체하여 경외지분회수 또는 경외상장용으로의 기타지출, 외국투자자감자, 자금철회 외국환매입∙지급 또는 직접 대외지급, 경외기구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한 경내세비, 경내 국유주주를 대신하여 국유주식보유량 감소수입을 사회보험기금으로 이체한 것, 외국환매입∙지급 또는 직접 대외 지급한 경상항목 지출 및 외환국(은행)을 거쳐 등기하거나 또는 외환국 비준을 거친 기타 자본항목 지출을 포함한다.  환결제 지급대기계좌 내의 인민폐 자금은 매입하여 자본항목 외화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환결제 지급대기계좌에서 출금하여 담보 또는 기타보증금을 지급한 용도의 인민폐 자금은, 담보이행 또는 위약발생으로 공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대로 환결제 지급대기계좌로 모두 이체하여야 한다.  4. 경내기구의 자본항목 외화수입 사용은 경영범위 내 진실 및 자유원칙 준수  경내기구의 자본항목 외환수입 및 그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 자금은 자가 경영범위 내 경상항목하의 지출 및 법률법규에서 허가한 자본항목하의 지출로 사용할 수 있다.  경내기구의 자본항목 외화수입 및 그 환결제 후 취득한 인민폐 자금의 사용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경영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국가법률법규에 금지된 지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2 별도의 명확한 규정을 제외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권투자 또는 은행 담보형 상품을 제외한 기타투자 재테크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3 비(非) 관련 기업에게 대출해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경영범위에 명확히 허가된 상황은 제외  4.4 비(非)자가용 부동산(부동산기업 제외)을 건설 및 구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경내기구와 기타 당사자간의 자본항목 수입 사용범위에 대해 계약 약정이 존재할 경우 해당 계약에 약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관련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경내기구와 기타 당사자간의 계약 약정은 본 통지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5. 자본항목 수입 및 그 환결제 후 자금의 지급관리 규범  5.1 경내기구가 자본항목수입을 사용한 환결제와 지급 처리 시, 모두 <자본항목계좌자금지급명령서>(별첨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 자금은 직접 환결제 지급대기계좌로 이체할 경우, 경내기구는 은행에 자금용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내기구가 자본항목 수입 사용을 신청하여 지급(환결제 후 환결제 지급대기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직접 대외지급 처리 및 환결제 지급대기계좌에서 인민폐 대외지급 처리 또는 직접 자본항목 외화계좌에서 대외송금 처리 포함)처리 시, 사실대로 은행에 자금용도와 관련된 실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은행은 “고객이해”, “업무이해”, “실사보고”등 업무전개 원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경내기구가 자본항목 수입 환결제와 지급 처리시, 진실한 심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매 자금지급 처리 시, 모두 심사 전 매 지급증명자료의 진실성과 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은행은 경내기구의 자본항목 외화수입 환결제 및 사용한 관련 증명자료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금융기관 외환업무 데이터수집 규범(1.0판)>발표에 관한 통지>(회발[2014]18호)의 요구에 따라, 즉시 자본금계좌, 경내자산현금계좌, 경내재투자계좌, 외채전용계좌, 경외상장전용계좌, 기타유형의 자본항목계좌, 환결제 지급대기계좌(계좌유형 코드2113)관련된 계좌, 크로스보더(cross-border)수지, 경내이체, 계좌 내 환매매 등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다. 그 중, 환결제 지급대기계좌와 기타 인민폐 계좌 간의 자금이체는 경내 수불금증명 작성을 통해 경내이체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전표 번호”란 중 자금용도 코드(회발[2014]18호 문건 중 “7.10 환결제용도코드”에 따라 작성)를 작성하고, 화물무역 조사항목하의 지급을 제외하며, 기타이체의 거래코드는 모두 “929070”으로 기입한다.  5.3 경내기구가 확실한 특수원인을 가지고 있어 잠시 실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실사보고의무 이행 및 거래완비 실제거래 배경의 전제 하의 그 관련지급 처리를 확정하고, 또한 업무당일 외환국 관련업무 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특수사항등록 제출을 처리하여야 한다. 은행은 지급완료 후 20 영업일 내 경내기구가 추가 제출한 관련증명자료를 수집 및 심사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 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특수사항등록업무의 실제증명자료를 추가 제출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경내기구가 예비금 명의로 자본항목수입을 사용한 경우, 은행은 상술한 실제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단일기관 매월 예비금(자유 환결제와 지급 환결제 포함)지급 누적금액은 2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일회성으로 모든 자본항목 외화수입 지급 환결제를 신청하거나 또는 환결제 지급대기계좌 중 모든 인민폐 자금 지급을 신청한 경내기구에 대해, 만약 관련된 실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그 환결제 및 지급을 처리할 수 없다.  6. 외환국의 사후감독관리와 위법조사 한 단계 강화  6.1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국무원령 제532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채등기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회발[2013]19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외국투자자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 및 관련문건 배포에 관한 통지>(회발[2013]21호), <국가외환관리국의 경외상장 외환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회발[2014]54호)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은행이 경내기구 자본항목 수입 환결제와 지급사용 등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적법한 지도와 조사를 강화한다. 조사 방식은 관련업무 주체에게 서명설명과 업무자료, 이행책임자, 현장조사 또는 복사업무주체 관련자료 및 법규위반상황 통보 등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6.2 본 통지를 위반하여 자본항목수입 환결제와 지급사용 등 업무를 처리한 경내기구와 은행에 대해,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엄중 및 악의적으로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그 자본 항목하의 환결제 업무처리를 잠시 중단시킬 수 있다. 엄중 및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내기구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그 자유 환결제를 처리하는 자격을 잠시 중단시키거나 또는 외환국 자본항목 정보시스템 중 그 진행업무에 대해 관리통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서명설명 제출 및 관련 조정을 진행하기 전, 이를 위해 기타 자본항목하의 업무 처리 또는 업무 관리통제를 취소할 수 없다.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실시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채등기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회발[2013]19호), <국가외환관리국의 경외상장 외환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회발[2014]54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상투자기업 외환자본금 환결제 관리방식 개혁에 관한 통지>(회발[2015]19호) 및 <국가외환관리국의 <다국적기업 외환자금집중운영 관리규정> 배포에 관한 통지>(회발[2015]36호) 등 이전규정과 본 통지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 및 외환관리부는 본 통지 수령 후 즉시 관할 내 중심지국, 지국, 도시상업은행 및 외자은행에 전달하여야 한다. 각 중국자본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본 통지 수령 후, 관할 분 지점에 신속히 전달하여야 한다. 집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자본항목관리사에게 보고하길 바란다.  첨부: 자본항목계좌자금지급명령서(생략)  국가외환관리국  2016년6월9일 |  | **国家外汇管理局关于改革和规范资本项目结汇管理政策的通知**  汇发〔2016〕16号  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各中资外汇指定银行：  为进一步深化外汇管理体制改革，更好地满足和便利境内企业经营与资金运作需要，国家外汇管理局决定在总结前期部分地区试点经验的基础上，在全国范围内推广企业外债资金结汇管理方式改革，同时统一规范资本项目外汇收入意愿结汇及支付管理。现就有关问题通知如下：  一、 在全国范围内实施企业外债资金结汇管理方式改革  在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中国（天津）自由贸易试验区、中国（广东）自由贸易试验区、中国（福建）自由贸易试验区相关试点经验的基础上，将企业外债资金结汇管理方式改革试点推广至全国。自本通知实施之日起，境内企业（包括中资企业和外商投资企业，不含金融机构）外债资金均可按照意愿结汇方式办理结汇手续。  二、 统一境内机构资本项目外汇收入意愿结汇政策  资本项目外汇收入意愿结汇是指相关政策已经明确实行意愿结汇的资本项目外汇收入（包括外汇资本金、外债资金和境外上市调回资金等），可根据境内机构的实际经营需要在银行办理结汇。现行法规对境内机构资本项目外汇收入结汇存在限制性规定的，从其规定。  境内机构资本项目外汇收入意愿结汇比例暂定为100%。国家外汇管理局可根据国际收支形势适时对上述比例进行调整。  在实行资本项目外汇收入意愿结汇的同时，境内机构仍可选择按照支付结汇制使用其外汇收入。银行按照支付结汇原则为境内机构办理每一笔结汇业务时，均应审核境内机构上一笔结汇（包括意愿结汇和支付结汇）资金使用的真实性与合规性。  境内机构外汇收入境内原币划转及其跨境对外支付按现行外汇管理规定办理。  三、境内机构资本项目外汇收入意愿结汇所得人民币资金纳入结汇待支付账户管理  境内机构原则上应在银行开立一一对应的“资本项目—结汇待支付账户”（以下简称结汇待支付账户），用于存放资本项目外汇收入意愿结汇所得人民币资金，并通过该账户办理各类支付手续。境内机构在同一银行网点开立的同名资本金账户、境内资产变现账户、境内再投资账户、外债专用账户、境外上市专用账户及符合规定的其他类型的资本项目账户，可共用一个结汇待支付账户。境内机构按支付结汇原则结汇所得人民币资金不得通过结汇待支付账户进行支付。  结汇待支付账户的收入范围包括：由同名或开展境内股权投资企业的资本金账户、境内资产变现账户、境内再投资账户、外债专用账户、境外上市专用账户及符合规定的其他类型的资本项目外汇账户结汇划入的资金，由同名或开展境内股权投资企业的结汇待支付账户划入的资金，由本账户合规划出后划回的资金，因交易撤销退回的资金，符合规定的人民币收入，账户利息收入，以及经外汇局（银行）登记或外汇局核准的其他收入。  结汇待支付账户的支出范围包括：经营范围内的支出，支付境内股权投资资金和人民币保证金，划往资金集中管理专户、同名结汇待支付账户，购付汇或直接对外偿还外债、划往还本付息专用账户，购付汇或直接汇往境外用于回购境外股份或境外上市其他支出，外国投资者减资、撤资资金购付汇或直接对外支付，为境外机构代扣代缴境内税费，代境内国有股东将国有股减持收入划转社保基金，购付汇或直接对外支付经常项目支出及经外汇局（银行）登记或外汇局核准的其他资本项目支出。  结汇待支付账户内的人民币资金不得购汇划回资本项目外汇账户。由结汇待支付账户划出用于担保或支付其他保证金的人民币资金，除发生担保履约或违约扣款的，均需原路划回结汇待支付账户。  四、境内机构资本项目外汇收入的使用应在经营范围内遵循真实、自用原则  境内机构的资本项目外汇收入及其结汇所得人民币资金，可用于自身经营范围内的经常项下支出，以及法律法规允许的资本项下支出。  境内机构的资本项目外汇收入及其结汇所得人民币资金的使用，应当遵守以下规定：  （一）不得直接或间接用于企业经营范围之外或国家法律法规禁止的支出；  （二）除另有明确规定外，不得直接或间接用于证券投资或除银行保本型产品之外的其他投资理财；  （三）不得用于向非关联企业发放贷款，经营范围明确许可的情形除外；  （四）不得用于建设、购买非自用房地产（房地产企业除外）。  境内机构与其他当事人之间对资本项目收入使用范围存在合同约定的，不得超出该合同约定的范围使用相关资金。除另有规定外，境内机构与其他当事人之间的合同约定不应与本通知存在冲突。  五、规范资本项目收入及其结汇资金的支付管理  （一）境内机构使用资本项目收入办理结汇和支付时，均应填写《资本项目账户资金支付命令函》（见附件）。结汇所得人民币资金直接划入结汇待支付账户的，境内机构不需要向银行提供资金用途证明材料。境内机构申请使用资本项目收入办理支付（包括结汇后不进入结汇待支付账户而是直接办理对外支付、从结汇待支付账户办理人民币对外支付或直接从资本项目外汇账户办理对外付汇）时，应如实向银行提供与资金用途相关的真实性证明材料。  （二）银行应履行“了解客户”、“了解业务”、“尽职审查”等展业原则，在为境内机构办理资本项目收入结汇和支付时承担真实性审核责任。在办理每一笔资金支付时，均应审核前一笔支付证明材料的真实性与合规性。银行应留存境内机构资本项目外汇收入结汇及使用的相关证明材料5年备查。  银行应按照《国家外汇管理局关于发布<金融机构外汇业务数据采集规范（1.0版）>的通知》（汇发〔2014〕18号）的要求，及时报送与资本金账户、境内资产变现账户、境内再投资账户、外债专用账户、境外上市专用账户、其他类型的资本项目账户、结汇待支付账户（账户性质代码2113）有关的账户、跨境收支、境内划转、账户内结售汇等信息。其中，结汇待支付账户与其他人民币账户之间的资金划转，应通过填写境内收付款凭证报送境内划转信息，并在“发票号”栏中填写资金用途代码（按照汇发〔2014〕18号文件中“7.10结汇用途代码”填写）；除货物贸易核查项下的支付，其他划转的交易编码均填写为“929070”。  （三）对于境内机构确有特殊原因暂时无法提供真实性证明材料的，银行可在履行尽职审查义务、确定交易具备真实交易背景的前提下为其办理相关支付，并应于办理业务当日通过外汇局相关业务系统向外汇局提交特殊事项备案。银行应在支付完毕后20个工作日内收齐并审核境内机构补交的相关证明材料，并通过相关业务系统向外汇局报告特殊事项备案业务的真实性证明材料补交情况。  对于境内机构以备用金名义使用资本项目收入的，银行可不要求其提供上述真实性证明材料。单一机构每月备用金（含意愿结汇和支付结汇）支付累计金额不得超过等值20万美元。  对于申请一次性将全部资本项目外汇收入支付结汇或将结汇待支付账户中全部人民币资金进行支付的境内机构，如不能提供相关真实性证明材料，银行不得为其办理结汇、支付。  六、进一步强化外汇局事后监管与违规查处  （一）外汇局应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国务院令第532号）、《国家外汇管理局关于发布<外债登记管理办法>的通知》（汇发〔2013〕19号）、《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外国投资者境内直接投资外汇管理规定>及配套文件的通知》（汇发〔2013〕21号）、《国家外汇管理局关于境外上市外汇管理有关问题的通知》（汇发〔2014〕54号）等有关规定加强对银行办理境内机构资本项目收入结汇和支付使用等业务合规性的指导和核查。核查的方式包括要求相关业务主体提供书面说明和业务材料、约谈负责人、现场查阅或复制业务主体相关资料、通报违规情况等。  （二）对于违反本通知办理资本项目收入结汇和支付使用等业务的境内机构和银行，外汇局依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及有关规定予以查处。对于严重、恶意违规的银行可依法暂停其资本项下结售汇业务办理。对于严重、恶意违规的境内机构可依法暂停其办理意愿结汇资格或在外汇局资本项目信息系统中对其进行业务管控，且在其提交书面说明函并进行相应整改前，不得为其办理其他资本项下业务或取消业务管控。  本通知自发布之日起实施。《国家外汇管理局关于发布<外债登记管理办法>的通知》（汇发〔2013〕19号）、《国家外汇管理局关于境外上市外汇管理有关问题的通知》（汇发〔2014〕54号）、《国家外汇管理局关于改革外商投资企业外汇资本金结汇管理方式的通知》（汇发〔2015〕19号）、《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跨国公司外汇资金集中运营管理规定>的通知》（汇发〔2015〕36号）等此前规定与本通知内容不一致的，以本通知为准。  国家外汇管理局各分局、外汇管理部接到本通知后，应及时转发辖内中心支局、支局、城市商业银行及外资银行。各中资外汇指定银行收到本通知后，应尽快转发所辖分支行。执行中如遇问题，请及时向国家外汇管理局资本项目管理司反映。  附件: 资本项目账户资金支付命令函（略）  国家外汇管理局  2016年6月9日 |